



산업통상자원부
관 세 청

<http://www.motie.go.kr>
<http://www.customs.go.kr>

보 도 자 료



2020년 12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2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2. 22.(화)	담당부서	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
담당과장	이위로 과장(T.043-870-5430) 한 민 과장(T.042-481-7810)	담당자	이병휘 연구관(T.043-870-5434) 김인순 사무관(T.042-481-7841)

불법 수입 난방용품·선물용품 125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- 산업부-관세청 협업,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과 관세청(청장 노석환)은 난방용품, 선물용품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불법 및 허위 표시 제품 60건 125만점을 적발,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조사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*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(11.11~ 12.11., 31일간)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.
 - * 온열팩, 전지, 완구, 체인형 조명기구, 전열기구 등 5개 품목 272건 272만점 대상
- 이번 적발된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 표시한 제품,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으로 전량 통관보류함으로써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.
 -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인증미필, 허위표시, 표시위반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120만여점 적발되었으며,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 4만4천여점, 완구가 9천여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.
 - 또한,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했다.
 -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개선·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.

<겨울철 난방·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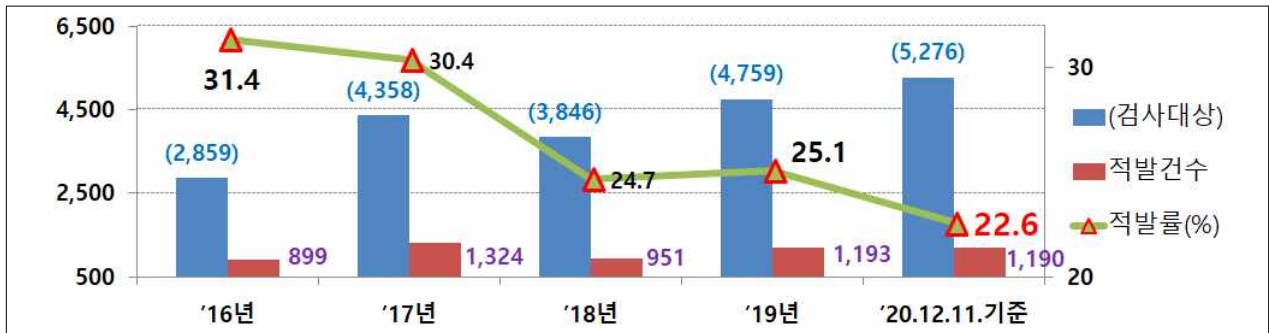
- ◇ 대 상 :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, 선물용품
- ◇ 참여세관 : 인천본부세관(인천항, 인천공항 등), 부산본부세관, 평택직할세관
- ◇ 검사결과 : 272건 272만점 중 불법·허위표시 제품 60건(22.1%), 125만점 적발

구 분	난방용품	선물용품	합 계
적발건수	39	21	60
적발수량(점)	1,244,418	10,041	1,254,459

구 분	적발 유형별 조사결과			합계
	인증미필	허위표시	표시사항위반	
적발건수	29	2	29	60
(적발수량, 점)	(144,541)	(97,002)	(1,012,916)	(1,254,459)

- 한편,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5년간 수입 전기·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·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8.8%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국내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.

<최근 5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·불량 적발률 동향>



- 국표원과 관세청은 제품이 융합화 되고, 온라인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불법·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.
- 내년에는 조사인력의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,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·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 품목 등을 중심으로 선별, 통관단계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부 이병휘 연구관(043-870-5434), 관세청 김인순 사무관(042-481-78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겨울철 난방·선물용품 통관단계 집중검사 결과

□ 대상 품목별 검사결과

[단위 : 건수]

구 분	대상 품목	집중검사 결과						
		계			인증진위 ¹⁾		제품시험 ²⁾	
		대상 (수량)	적발 (수량)	%	대상 (수량)	적발 (수량)	대상 (수량)	불량 (수량)
난 방 · 선 물 용 품	① 온열팩 (일회용 핫팩)	50 (2,379,209)	26 (1,199,535)	52.0	50 (2,379,209)	26 (1,199,535)	0 (0)	0 (0)
	② 전지 (휴대용 손난로)	18 (68,048)	8 (44,843)	44.4	18 (68,048)	8 (44,843)	0 (0)	0 (0)
	③ 완구 (기타완구)	89 (161,383)	19 (9,416)	21.3	89 (161,383)	19 (9,416)	0 (0)	0 (0)
	④ 체인형 조명기구 (크리스마스 장식조명)	77 (69,405)	2 (625)	2.6	77 (69,405)	2 (625)	0 (0)	0 (0)
	④ 전열기구 (전기온풍기)	38 (42,619)	5 (40)	13.2	36 (26,981)	5 (407)	2 (15,538)	0 (0)
합 계		272 (2,720,564)	60 (1,254,459)	22.1	270 (2,705,026)	60 (1,254,459)	2 (15,538)	0 (0)

비고) ¹⁾인증진위(인증미필, 허위표시, 표시 위반) 세관내(협업검사센터)에서 발취 검사 실시
²⁾전문 시험·검사기관을 통하여 제품시험 실시

참고 2

겨울철 난방·선물용품 통관단계 부적합 적발 구분

(조사기간 : 2020.11.11. ~ 12.11.)

구 분	품목명	집중검사 부적합 적발				조치 내용
		업체수 (수입)	모델수	건수	수량	
① KC인증미필	온열팩 (일회용 핫팩)	6	6	7	106,225	통관보류
	전지 (휴대용 손난로)	1	1	2	37,440	
	완구 (기타완구)	6	8	14	212	
	체인형 조명기구 (크리스마스 장식조명)	2	2	2	625	
	전열기구 (전기온풍기)	4	4	4	39	
	소 계	19	21	29	144,541	
② 허위표시	온열팩 (일회용 핫팩)	1	1	1	96,000	통관보류
	완구 (기타완구)	1	1	1	1,002	
	소 계	2	2	2	8,203	
③ 표시위반	온열팩 (일회용 핫팩)	6	6	18	997,310	통관보류
	전지 (휴대용 손난로)	5	5	6	7,403	
	완구 (기타완구)	4	4	4	8,202	
	전열기구 (전기온풍기)	1	1	1	1	
	소 계	10	10	22	1,102,515	
합 계		37	39	60	1,254,445	

비고)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,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

참고 3

겨울철 난방·선물용품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

(자료출처 : 한국제품안전관리원)

구분	사례 사진	비고
<p>① KC 인증 미필</p>	 <p>(크리스마스 장식조명)</p>  <p>(온열팩 - 일회용 핫팩)</p>	<p>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</p>
<p>② 허위 표시</p>	 <p>(완구-기타완구)</p> <p>* 안전확인신고된 제품과 구성품 다름 (구성품 2개 추가되었음)에도 안전확인 신고 제품으로 표시 ☞ 추가 구성품에 대한 시험 후 신고 필요</p>  <p>(온열팩)</p> <p>* 안전확인신고된 수입자가 아닌자가 타사 신고번호로 표시 ☞ 안전확인신고된 수입자로 수정 또는 안전확인 등 보완 필요</p>	
<p>③ 표시 사항 위반</p>	 <p>전지(휴대용 손난로)</p>  <p>(온열팩)</p>	<p>인증정보 미표시 및 표기오류 (제조사, A/S연락처, 등)</p>

비고) ①KC인증이 없거나, ②안전확인신고제품과 실제 수입된 제품이 다르거나, ③제조사·A/S 연락처·제조 연월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적발, 통관차단 조치됨

참고 4

관세청-국표원 협업,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절차

□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 업무 절차

- 수입제품 중 불법·불량 제품의 사전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관세청 협업사무소*를 통해 통관단계 조사(16.1월 인천세관 협업검사센터 정식 개소)
 - * 인천본부세관(인천항, 인천신항, 인천공항), 부산본부세관, 평택직할세관에 한국제품 안전관리원 직원 6명을 현장 파견 협업 검사 실시 중(관세청 소관 : 통관기획과)
- 불법·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“수입제품선별검사 시스템(C/S)”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제품을 선별 조사 및 처리
 - 선별된 제품 중 불법·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·폐기·개선조치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조치
- * 관련법 :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(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), 관세법 제246조의3(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)

<협업 체계도>

